

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5. 2. 11.>

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(제14조제1항제3호 관련)

1.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
$$\text{피난안전구역 면적} = (\text{수용인원} \times 0.1) \times 0.28\text{m}^2$$

2.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
$$\text{피난안전구역 면적} = (\text{용도} \cdot \text{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} \times 0.1) \times 0.28\text{m}^2$$

비고: 수용인원은 용도·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.